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29호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의회장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의원의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법령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제2조)
- 직무상 장애 판단의 근거법령 수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의원”을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폐질등급”제1등급에서 제14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

해등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등급에서 제14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별지제1호서식]

접제번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수					15일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청구자	주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금용기관	은행			계좌번호	
	지점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의회의장 직인					
의성군수 귀하					

②-----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

② (현행과 같음)

[별지제1호서식]

접제번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수					15일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청구자	주소	□□□ -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금용기관	보상금수령금용기관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붙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의회의장 직인					
의성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설명자료(행정안전부 시달)

○ 비회기 중 상해·사망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에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
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
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
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장해등급(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복장뼈)·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교: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장해 상태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1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 장해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 비고: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
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예: 장해등급이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이 제
5급으로 된다). 다만,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 또는 제11급부터 제14급까지
에 해당하는 장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
해등급을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